

한국 내 시리아 난민 수용의 제 문제 : 현황, 심사, 처우에 관하여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차례

요약	1
논의의 배경과 시리아 문제 개관	3
한국 내 시리아 난민의 현황	5
현 정부의 시리아 난민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의 준비	7
[대책1] 시리아 난민에 대한 심사의 문제 개선 및 기존의 인도적 체류자 전면 재심사	10
[대책2] 준(準)난민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시리아 난민의 처우 문제 개선	12
[대책3]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통한 시리아 난민의 재정착 수용	18
참고문헌 Reference	19

요약

- 2011년 시작되어 5년째 계속 중인 시리아 내전은 2015년 9월 기준으로 국외 피신 4,088,099명에 달하는 난민(Refugee)을 양산하고 있음.
 - 그간 인접국가와 유럽에 난민수용에 관한 인도적 책임분담 논의가 지루하게 계속되다가, 최근 터키 해안에 밀려온 3세 아동 아일란 쿠르디의 주검 사진에 독일을 위시한 유럽의 난민정책 기조가 수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수많은 언론들과 SNS상에서 추모열기가 뜨겁고, 대한민국 정부의 시리아 난민에 관한 역할에 대해 관심이 전례 없이 고조됨.
- 한국 내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존재함.
 - 2015년 10월 6일 기준 848명의 시리아 난민신청자가 있었고, 그중 3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되어 약 0.35%의 극히 낮은 인정률을 보이고 있음.
 - 시리아 난민의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형식적 심사에 따른 난민 불인정 후 단지 인도적 체류 허가만 기계적으로 부여받고 있어 문제임.
 - 지난 20년 동안의 난민 인정자 599명보다 주로 시리아 난민으로 인해 수년간 급증한 인도적 체류자가 876명이 되어 더 많아짐으로서, 사실상 준(準)난민인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처우 보장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음.
- 정부는 한국에 도착한, 체류 중인 시리아 난민에 대해 ‘내전 종료할 때까지’ 송환하지 않는다는 아무 권리 없는 인도적 체류만 허가하고, 동시에 해외비자 발급의 거부로 추가적인 시리아 난민 유입을 막고 있으면서도, 송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아무런 인도적 정책이 없음에도, 송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외교적 수사를 활용 중.
- 시리아 난민들이 한국에서 당면한 문제는 크게 절차의 문제로 “난민임에도 난민으로 인정치 않고 인도적 체류 허가만 하는 것”, 그리고 처우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사실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난민임에도 인도적 체류 허가의 범주에 들어간 난민들에게 미흡한 권리 보장의 문제”, “재정착 제도를 통해 시리아 난민 수용 쿼터를 늘리려는 국제사회의 기조와 달리 아예 난민 재정착 제도의 대상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첫 번째 대책으로 전쟁난민은 난민협약 상 난민이 아니라는 부정확한 기준을 버리고 구체적 심사를 통해 시리아 국적자들 중 협약 상 박해의 위험이 인정되는 난민들은 난민으로 인정하여, 실제로 공정, 타당,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난민 인정률을 제고하고, 기존의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시리아난민들에 대한 전면 재심사가 필요함.

- 두 번째 대책으로 그동안 수가 적어 크게 집중되지 못했던 그룹인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에게 관한 미비한 처우보장을 개선해야함.
- 즉, 주로 시리아 난민들로 구성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들이 장기적 체류와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사실상 난민으로서의 실질에 맞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1) 임시적 성격의 기타 비자(G-1-6)와 다른 비자 타입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2) 취업 허가 시 가능 분야의 제한을 없애고, 3) 지역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4) 국내의 시리아 난민들의 해외 체류 가족들에 대한 비자 및 여행증명서 발급으로 선진국과 같이 가족 결합원칙을 보장하고, 5) 난민에 준하게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 교육권 보장, 학력 및 자격 인정 등을 꾀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함.
- 세 번째 대책으로 난민법의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통해 현재 준비 중인 30명의 미얀마 난민 재정착 뿐 아니라, 재정착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삼아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재정착을 검토 시행해야함.

논의의 배경과 시리아 난민 문제 개관

1. 시리아 난민 발생의 배경: 2011년 시작되어 5년째 계속 중인 내전

- 시리아는 이슬람 시아파의 분파인 소수 종파 알라위파의 바아스당 하페즈 아사드(Hafez-al-Assad) 대통령이 1971년 무혈 쿠데타로 대통령직을 시작하여 30년 동안 집권, 사망한 후 2000년 그 아들인 바샤르 아사드(Bashar-al-Assad) 대통령이 현재까지 15년째 집권 중임. 시리아는 아사드(Assad) 가문이 40년 이상 집권해온 장기 독재, 비밀경찰에 의한 탄압과 자유의 상실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었음.
- 2011년 3월 15일 시리아 남부 데라에서 반정부 구호를 학교 벽에 쓴 청소년들이 구금되고 이후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자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고, 군경이 비무장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여 반정부 시위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군경이 탈영하여 반군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해 시위가 내전 양상으로 격화됨.
- 소위 ‘시리아 혁명’으로도 불리는 위와 같은 시위의 확산은 오랫동안 아사드 정권에 의한 폭압적인 지배에 대해 누적되어 왔던 불만이 폭발된 것으로, 2010년 12월 이후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이란, 요르단,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예멘 등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각국의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해석되었음. 그러나 아사드 정권, 자유시리아군(FSA) 등 온건반군, 이슬람 국가(IS), 쿠르드족 등 다양한 단위 사이의 전쟁은 종파간, 인접국가 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종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2. 시리아 난민 문제의 국제성

- 한편, 격화된 시리아 정부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 주로 반군이 점령한 북부지역이 초토화 되고 있어 폭격 및 무차별 학살을 피하고, 정부군의 강제징집이나, 이슬람국가(IS)의 잔학한 행동으로부터 많은 시리아 국민들이 내전 발발 시부터 국외로 피신하여 난민(Refugees)이 되거나,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여 국내피난민(IDP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이 되어 왔음.
- 특히 시리아를 등진 난민의 경우 2015년 9월 6일 기준, 유엔난민기구 터키대표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11년 이후 시리아를 떠난 시리아 난민들이 4,088,099명에 달하며, 210만여 명은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그리고 레바논에, 190만여 명은 터키에, 2만4,000여 명은 북아프리카에, 34만여 명이 유럽에 흩어져 있음.
- 이에, 시리아 내전 사태로 발생한 난민문제는 유엔난민기구 고등판무관이 “현 세대의 가장 커다란 인도적 위기(Biggest Humanitarian emergency of our era)” 라고 평가할 정도이며, 인접 국가로 피신하는 난민들의 수용 문제가 국제적인 의제가 되어 있는 상황임.

3.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이 촉발한 국제적인 난민 수용 분위기 확산

- 시리아에 물리적으로 접한 국가들이 아닌 유럽 국가들의 경우 더블린 조약 등을 통해 난민 수용에 대한 책임 분담을 표면적으로 피하면서, 국내 경제, 여론의 동향 등을 고려하며 중동 발, 아프리카 발 난민 수용을 사실상 꺼리고 있었고, 시리아 난민들의 수용에 대한 검토도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였음.
- 그런데 2015년 9월 2일 시리아 국적 쿠르드계 난민 아동 아일란 쿠르디(Aylan Kurdi, 3세)의 주검이 터키의 한 휴양지 해변에 밀려와 엎드린 자세로 발견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이 전세계에 충격을 가져다 줌.
- 이로 인해 최근 독일이 더블린 조약의 적용을 유보하고 타 유럽국가에 먼저 도착하여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까지 수용하겠다고(‘난민 신청을 접수하겠다’는 의미이지 난민 인정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님)고 밝히고, 영국도 일정 정도의 수용 의사를 밝히고, 심지어 세계 제1의 난민재정착 수용국인 미국까지도 시리아 난민 수용의 쿼터를 늘리라는 압력을 받는 등 기존의 국제사회의 책임 분담 논의가 보다 실질화 되고 있는 실정임.

한국 내 시리아 난민의 현황: 극히 낮은 난민 인정 처분과 대부분 난민 불인정 처분 후 인도적 체류 허가

- 한국에도 시리아 국적 난민들이 존재함. 입국 시기별 통계는 수집, 조사된 적이 없으나, 그 중 더 많은 수는 시리아 내전 발발 전(前)부터 사업, 유학 등을 이유로 한국 내에서 이미 체류하다가 내전으로 인해 돌아갈 수 없게 되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로 파악되고 있으며, 내전 발발 후(後) 한국으로 피신하여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도 시기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난민: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쓰이는 ‘난민(難民)’은 ‘곤란함을 겪은 사람’ 정도로 풀이되어, 피난민으로 이해됨. 그러나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의 법률적 의미는 ‘본국 송환 시 난민협약이 정한 사유와 관련하여 박해를 받을 합리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과 같은 것으로서 차이가 있음.
- 난민과 난민 신청자: ‘난민 신청자(Asylum Seeker)’와 ‘난민(Refugee)’은 구별됨. 난민 신청자의 난민 신청을 난민협약 당국이 심사하는 난민 인정 절차를 거쳐 박해의 위험이 확인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르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2013년 7월 1일부터 선진적으로 시행된 난민협약의 국내 이행 법률인 대한민국 난민법(이하 ‘난민법’)에 따라 합법적 체류, 사회권, 의료권, 교육권 등을 보장 받게 됨.
- 그러나 시리아 국적 난민 신청자 중 대부분은 난민 신청에도 불구하고 난민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는 바, 협약 상 요건을 갖춘 난민들도 불인정 받은 함
- 예컨대, 2015년 5월 31일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의 713건의 시리아 난민 신청자 중 3명만 난민으로 인정되어 약 0.42%의 인정률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전체 난민 신청자 12,208명중 599명이 인정된 1994년~2014년까지의 역대 난민통계 인정률 약 4.9% 보다도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수치임(2015. 9. 6. 시점 법무부 자료- 848명 신청, 641명 인도적 체류허가, 3명 난민 인정. 여전히 난민 인정률은 약 0.35%에 그침).

[표1] 1994년~2015년 5월 31일 국내 시리아 국적 난민 통계

(단위 : 명)

국적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 중	
			인도적 체류	불인정		1차 심사	이의신청
시리아	713	3	577	8	73	51	1

자료 :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

[표2] 1994년~2015년 7월 31일 국내 전체 난민 신청 통계

(단위 : 명)

구분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 중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인도적 체류	불인정		1차 심사	이의 신청
1994~ 2015년	12,208	522	77	876	4,684	1,651	2,901	1,574

자료 : 법무부 의원실 제출자료(1994-2015. 7. 31. 통계)

- 713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3명 중 2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1차 심사 단계에서 인정되었고, 1명은 법무부의 이의신청 단계에서 인정되었음. 그 밖에 행정소송단계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신청자는 한명도 없어서, 시리아 난민들이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이는 2013년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유엔난민기구와 세계국가들의 32%의 평균적인 난민 인정률(RRR)(UNHCR, Statistical Yearbook 2013)은 물론이고,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의 낮은 5% 이하의 난민 인정률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일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난민 집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 심각한 괴리가 있음.

현 정부의 시리아 난민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의 존부

- 현 정부가 국내외 공개적으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공개한 적은 없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뿐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국내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원칙적으로 난민 불인정 처분 후 ‘내전이 종료할 때까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정책 의사결정 단위와 그 내용이 명확히 공개되진 않은 상태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4년 5월부터 원칙적으로 시리아 국적 난민 신청자들의 난민법 제5조에 따른 난민 신청에 대해서 난민 불인정 결정 후 인도적 체류만을 허가하고 있음.
- 이에 신규로 도착한 시리아 국적 난민 신청자들의 경우 인천공항 등 한국의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민법 제6조의 출입국항 난민 신청 절차를 통과하여 입국이 허가되고, 이후 난민 불인정 결정 후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게 됨. 당국은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자체를 난민 보호의 성과로 국제 사회에서 홍보하고 있으나¹⁾, 어차피 한국 정도의 국제적 신인도가 있는 국가가 국내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들을 현재 강제 퇴거 집행으로 송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차피 돌려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이름만 붙인 것에 불과한 인도적 체류 허가는 결코 난민 보호의 성과로 포장할 수 없음.
-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협약 상 보호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난민 신청자들(난민법 제2조 제3호)에게 허가하는 체류지위(G-1-6). 당국은 고문방지협약 등의 사유를 고려한 보충적 보호의 일종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 난민 신청자를 송환시키는 것이 부적절하고 실제로 송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주로, 내전)에 대해 임의로 허가함.
- 과연 한국의 인도적 체류 허가는 보충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에 해당 하는가: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의미 뿐 아니라, 정착, 통합에 관한 권리까지 포괄하는 의미의 난민 보호는 박해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세계 대전 직후에 만들어진 1951년 난민협약 만으로 충분히 달성되기 어려우며, 이에 난민협약과 별도로 CAT, ICCPR, EU directive, ECHR 등과 같은 국제규범의 해석에 근거하여 난민협

1) 15. 9. 30.자 외교부 보도자료 “윤병세 외교부장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 강조”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boardid=235&typeID=6&tableName=TYPE_DATABOARD&seqno=356515

약 상 난민의 권리에 준(俊)하는 권리를 부여하여 운영되는 제도들을 보충적 보호라고 함. 한국의 인도적 체류허가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당국의 재량에만 의존된 점, 아무런 권리가 없어 ‘보호’ 라고 볼 수 없는 점 - 예컨대,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현재는 단지 그와 같은 상황을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지위로 불가피하게 승인한 것일 뿐임 - 에 비추어보면 결코 보충적 보호라고 볼 수 없음.

2. 추가적인 시리아 난민 유입 억제에 초점

- 그러나 한편, 당국은 사유를 불문하고 해외에 있는 시리아 국적자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등(예: 주 터키 한국대사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리아 난민들의 한국 도착을 봉쇄하고 있음. 이에 해외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경우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들의 가족 등 특수한 고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피신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3. 국내외에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표시

- 한편, 국제 사회에는 대통령이 2014년 9월 24일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참사를 목격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인도적 참사 예방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고 밝히는 등,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일부 국외 시리아 난민 캠프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기초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는 태도를 취함.
- 그러나 실제로 인도적 체류 허가는 구체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시리아 국적 난민 신청자들을 시리아로 송환하는 것 자체로 심각한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정책 자체가 어떤 인도적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낮은 난민 인정률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당국은 최근 총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인정자를 계산하는 개념인 ‘난민 인정률’ 이 아닌, 총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인정자에 인도적 체류 허가자’ 까지 포함시켜 계산하는 개념인 ‘보호률’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1994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역대 난민 보호률이 18.1%(12,208명 중 522명+876명)에 이른 다며 통계를 분식(粉飾)하고 있음.

4. 재정착난민제도의 대상으로 시리아 난민 미고려

-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문제 종국적 해결방안 3가지 중 하나인 난민재정착제도에 관해, 당국

은 난민법의 시행으로 규범적 근거가 생긴 이후 재정착희망난민제도(난민법 제24조)의 시범적인 시행을 2015년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이나 미얀마 캠프 소재 난민을 일본의 파일럿 프로젝트의 선례를 따라 연간 30명 이내에서 수용코자 하고, 시리아 난민의 경우 고려하지 않음.(법무부 2015. 4. 23.자 배포 보도자료)

- 재정착난민제도(Resettlement): 소위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해외 난민캠프에 임시 체류 중인 협약난민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국제적인 책임 분담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국내에 데려와 사회통합을 시켜 정착케 하는 제도로서, 201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26개국 이 약 15만 명의 난민을 자국에 재정착시킴. 2014년 기준 미국 48,911명(1위), 캐나다 7,233명(2위), 호주 6,162명(3위)가 재정착난민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임.²⁾
- 유엔난민기구는 재정착 난민 추천 대상으로 2014년에만 21,154명의 시리아 난민들의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각국에 시리아 난민 재정착에 관한 협력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음. 실제로 아일란 쿠르디 사건 이후 테러의 위협 등을 이유로 시리아 난민 재정착을 꺼려오던 제1위 재정착 난민 수용국인 미국마저 강한 압박을 받고 있고, 제2위인 캐나다가 1만 명의 시리아 난민 재정착 계획을 3년에 걸쳐 추진하려던 것을 2016년 9월까지로 대폭 앞당기기로 하였고,³⁾ 3위인 호주가 기존의 2015.7.~2016.6. 회계연도의 최대 1만3,750명 재정착 계획에 더하여 시리아와 이라크의 난민 1만2,000명을 수용하도록 밝혔고⁴⁾, 심지어 일본에서도 아베 정부에 대해 시리아 난민 재정착에 대한 촉구가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유럽 내의 책임 분담 문제 뿐 아닌, 비(非)유럽 국가들도 국가 간 어떻게 책임 분담을 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한국은 동떨어져 있음.

2) UNHCR, "RESETTLEMENT FACT SHEET 2014" <http://www.unhcr.org/524c31a09.pdf> 위 세 국가외에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핀란드, 뉴질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이 대표적인 재정착난민제도 시행국임.

3) WallStreetJournal, Canada Moves to Speed Up Resettlement of Syrian Refugees(15. 9. 19.)<http://www.wsj.com/articles/canada-moves-to-speed-up-resettlement-of-syrian-refugees-1442704172>

4) The Guardian, Australia to accept an extra 12,000 Syrian refugees and will join US-led airstrikes(15. 9. 9.) <http://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5/sep/09/australia-to-accept-an-extra-12000-syrian-refugees-and-will-join-us-led-air-strikes>

[대책1] 시리아 난민에 대한 심사의 문제 개선 및 기존의 인도적 체류자 전면 재심사

- 시리아 난민에 대한 첫 번째 문제는 난민임에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만 허가하는 방법을 통해 제대로 된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신규 난민 신청자들에게 대한, 그리고 기존에 인도적 체류를 받은 난민들의 재신청에 대한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보다 다수의 시리아 난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부 개정입법도 요구됨.

1. 협약 상 난민을 형식적 심사 후 난민으로 불인정한 후 인도적 체류허가

- 시리아 국적 난민 신청자들 중에는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난민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국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존재함.
- 예컨대, 유엔난민기구는 시리아의 국가정황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를 기초로 1) 시리아 정부에 의해 반정부행위자로 인식된 자, 2) 시리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로 인식된 자, 3) 무장집단과 쿠르드 무장집단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자로 인식된 자, 4) 기자, 의사, 학자, 예술가, 인권활동가 등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 5) 순니, 알라위, 시아, 기독교인, 이스마일, 드루즈 등의 종파단체의 구성원, 6) 쿠르드족과 기타 소수종족, 7) 팔레스타인 난민, 8) 성 착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여성과 소녀들, 9) 소년병 강제징집, 교육거부, 폭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 10) 성소수자들, 11) 인신매매피해자들과 같은 특성을 지닌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난민협약 상 보호를 제공해야할 것으로 판단(International Protection Considerations with regard to people fleeing the Syrian Arab Republic, Update II)하고 있음.
- 그러나 시리아 난민 신청자들에게 ‘난민 불인정 결정 후 인도적 체류 허가’ 를 하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일선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는 어차피 결론이 정해져있다는 판단 하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박해의 위협’ 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실제로는 난민임에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현재도 공식적으로 ‘전쟁난민은 난민 협약 상 난민이 아니다’ 라며 잘못된 심사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실제로 국내에서도 현재 인정된 3명의 시리아 난민 중 1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시 심의를 해본 결과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인 바, 시리아 난민 신청자들의 전수(全數)를 재심사할 경우 난민으로 인정되어 보호를 제공해야할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시리아 난민들의 재정착(Resettlement) 정책까지 새롭게 고려해야하는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전면적인 재심사를 단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어려울 경우,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인 30일을 한시적으로 대폭 늘려 신청을 받아 재심사할 필요가 있음.

2. 통상적인 난민인정 심사 과정의 문제 등

- 이와 같은 문제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케 하는 정책과 더불어, 구조적으로 낮은 난민 인정률을 보일 수밖에 없게 하여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난민인정 심사 과정의 문제(예를 들어, 1) 난민인정 심사를 출입국관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문제, 2)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체류기간 연장 목적의 남용적 난민 신청자로 간주하는 시각의 문제, 3) 부족한 난민 심사관의 수와 난민협약에 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부존재, 4) 난민인정 심사 과정에서의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의 미흡한 보장, 5) 구성적인 질문이 아닌 단답이 유도되는 열거식 질문을 통해 난민 사유의 존부가 아닌, 거짓말의 존부를 찾아내기 위해 이뤄지는 심사과정의 문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이와 더불어 대부분 아랍어만 구사할 수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특수한 문제로, 1) 당국이 전문적인 아랍어 통역을 구하기 어려워 충실한 심사가 어려운 점, 2) 난민으로 불인정한 후 이를 30일 내에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90일 내에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룰 수 있다는 사실과, 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사유를 명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서가 한국어와 영어로만 기재되고 아무런 설명이 없어, 대다수의 난민들이 자신이 왜 불인정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체소기간이 도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 등도 문제임.
- 현재, 위 쟁점에 관한 법안으로 1)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이 11인의 여야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난민법 일부 개정안(2015년 6월 18일, 의안번호 15648)이 출입국법에서 하는 난민 신청 절차의 절차적 개선안과, 난민 면접 시 자료를 참고하여 진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등의 내용을, 2)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로 13인의 여야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안(2015년 6월 18일, 의안번호 15649)이 난민 면접 과정의 녹화 및 녹음과 관련된 절차적 권리보장, 당국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사용배제, 불인정 결정통지서의 통번역의무 등을 다루어,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정상적인 심사를 위해 각 법안의 통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책2] 준(準)난민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시리아 난민의 처우 문제 개선

- 난민에 대한 두 번째 문제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실제로 앞으로도 100%의 시리아 난민 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미 기존에 당국의 형식적 심사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받은 난민 신청자들은 다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움), 정부에 의해 강제송환이 금지되는 지위(난민법 제3조)를 가진 자들로서, 사실상 난민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에게 부여한 인도적 체류 허가의 미흡한 처우보장을 시급히 개선해야하는 것임.
- 특히, 이와 같은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처우보장 문제는 최근 2년 동안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대거 인도적 체류지위 부여로 실질적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876명(2015년 7월 31일 기준)으로 단기간에 급속도로 증가하여, 한국이 난민협약을 비준한 이래 20여 년 동안 인정한 난민이 총 599명(2015년 7월 31일 기준)인 것보다 더욱 많아 오히려 난민의 처우보장보다, 보호 필요성이 난민과 사실상 크게 다를 바 없는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보장이 더욱 시급해진 점, 그들의 대부분이 사실상 난민으로서 보호를 받았어야 했을 시리아 난민들인 점이란 사실에 의해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적인 관점(Humanitarian)에서 체류를 허용하였다고 하고 심지어 ‘보호율’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인도적 체류자도 보호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게 그들은 사실 도무지 인도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역설적인 점. 한편, 영구 정착이 전제된 시리아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극단적으로 소외된 계층으로 존재할 때 향후 사회안전망을 이탈한 잠재적 불안을 크게 촉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이는 결국 국민들이 부담할 사회적 비용인 점도 고려할 때, 장기적 전망 없이 설계, 이행되고 있는 권리박탈적인 현 제도는 신속한 정비가 필요함.
- 결국 난민협약의 기준을 고려하여 더 많은 수의 시리아 난민들을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당국으로서는 1) 기존의 심사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문제, 2) 난민협약의 기준이 협소하여 모든 보호 필요성이 있는 난민들을 포괄하기 어려운 문제등도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를 대폭 상향하는 쪽으로 보호 개선하는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1. 임시적 성격의 기타비자(G-1-6)의 부여

-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은 사실상 영구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것이 다름없음에도 난민과 달리 임시적인 체류 자격만을 소지한 것으로 전제되어, 실질에 맞지 않는 불이익을 다양한 경로에서 받고 있음. 실무상 인도적 체류 허가의 자격은 난민 불인정 결정서에 ‘난민으로 불인정하나 내전이 종료할 때까지 인도적으로 체류를 허가한다’ 라고 기재하여 교부받음으로서 득하고, 이를 이용하면 1년을 기한으로 하는 기타비자(G-1-6)를 부여받을 수 있고, 1

년 단위로 이를 연장함.

- 그러나 G-1비자는 통상적인 비자가 아니라, 송환이 불가피하나 산재청구, 체불입금 소송, 치료 등의 목적, 난민신청 후 심사 미종료 등으로 임시적인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3개월 정도의 단기간의 체류를 예정한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난민협약 상 난민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난민에 준하는 보호가 개념상 필요할 외국인일 뿐 아니라, 장기간의 체류가 부득이하게 예정되어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는 걸맞지 않은 것임.
- 이로 인해, 인도적 체류 허가자도 가지는 번호는 G-1-6로 되어 있으나, 통상적인 G-1 비자 소지 외국인들과 다를 바 없이 제도상 취급되어 아무런 사회보장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실제 취업 과정에서도 사업주들이 G-1비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사실상로도 취업 제한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음.
- 이에, 난민 불인정이 되었으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은 사람으로서 난민에 준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F타입의 비자를 신설하여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당국이 위와 같이 난민에 준하는 사람이 아니나 인도적으로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재량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인도적 체류 허가 자격을 그와 같이 두 종류로 이원화하는 것도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음.

2. 취업가능 분야 제한

- 인도적 체류자들은 난민과 달리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 외의 직장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음.
- 현행 난민법상 준(準)난민인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난민과 함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대상이 되는 것(난민법 제3조)과, “법무부장관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허가를 할 수 있다” (난민법 제39조)라는 조항 뿐 임.
- 사실, 취업허가(Work Permit)는 외국인에 의한 국내 노동시장 교란 방지라는 출입국관리의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아무런 생계지원이 없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에게 종교단체의 선의에만 기대거나, 생존을 포기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한 당연한 것임.
- 그러나 별도의 취업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난민 인정자(F-2)와 달리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는 사실상 취업영역이 극히 제한됨.
- 당국은 ‘사행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외국인 매뉴얼(체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업을 허가된다고 하고 있으나, 실무상 전문적인 자격을 요하는 다른 비자타입으로 취업을 예상되는 직종들에 대해서는 취업

을 허가하지 않아왔음.

- 다만, 최근엔 포괄적인 의미의 근무를 원하는 직종에 관한 자격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를 1년 단위로 허가하고 근무처를 옮길 때에 근무처 변경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여 포괄적 취업허가에 준(俊)하는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난민 인정자와 같이 ‘자격인정’ 에 대한 근거(난민법 제36조)가 없어서 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원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언어, 문화, 사회의 장벽을 넘어 새로운 자격을 모두 취득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단순노무를 벗어나기 어렵고, 이에 대부분의 시리아 난민들은 공장 등지에서만 일하고 있음.
-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에게 취업허가 제도 자체는 유지하더라도, 난민에 준하여 포괄적인 형태의 사전적인 취업허가 뿐만이 아닌 자격인정의 근거를 난민법에 명기 하도록 정책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3. 지역건강보험 가입 자격 부존재

-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인 난민들은 실제로 직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직장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의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로를 하지 못하는 자들도 고려하면 지역건강보험 가입 자격의 부여가 필수적임. 그러나 난민과 달리 지역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없음으로 인해 높은 의료비용을 감히 부담하지 않고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음.
- 예컨대, 단순한 검진 외의 치료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예를 들어, 여성 시리아 난민이 단순 출산(出産)을 하고자 하여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병원을 찾지 않는 한 150여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임).
- 이는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지역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열거하고 있는데, 임시 체류자격인 G-1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

[표3] 지역건강보험 가입 자격 부여와 관련된 종전의 정책 논의

의견표시	2013. 11. 29. 국가인권위원회(사건번호 13-진정-0026800) 인도적 체류자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제한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	2015. 1. 26. 보건복지부장관(보험정책과-496) 정책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사유 통지
이유	“건강보험제도는 공적부조의 성격과 다르게 보험원리에 의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임. 우리 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높은 의료비의 부담으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인도적 체류자는 국내 거주 및 경제활동 목적이 아닌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류를 허가한 것이므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은 적합하지 않음

- 위 쟁점과 관련하여 시리아 난민들의 급증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늘어나기 이전에도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진정사건에 대해 2014년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건강보험 가입 자격의 부여를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 이에 대한 불수용 의견을 밝혔으나,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인도적 체류자의 개념과 인정취지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드러냄.
- 현재, 위 쟁점에 관한 법안으로 1)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익표의원이 대표로 10인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안(2015년 5월 22일, 의안번호 15234)이 난민 인정자의 권리 중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에 관한 조항을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 2)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이 11인의 여야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난민법 일부 개정안(2015년 6월 18일, 의안번호 15648)이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서 외에 독립된 인도적 체류지위 증명서 발급 의무와, 지역건강보험 가입 자격의 부여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바,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건강권 측면의 처우보장을 위해 통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가족결합원칙의 현실적 장벽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들은 난민 인정자와 달리 가족결합원칙(Principle of Family Reunion)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전(內戰)과정에서 가족이 전 세계로 흩어진 시리아 난민들이 국내에서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외국에 있는 가족을 한국에 데려오는 것임.
- 가족결합원칙: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가족 구성원의 재결합을 위한 수단과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한해 인정. 1951년 난민협약 전권회의 최종문서,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제3항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행 난민법은 “법무부장관은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난민법 제37조 제1항)라고 하여 근거를 두고 있고, 실무상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게는 간소한 난민 인정 절차를 통해 곧장 난민 인정을 하고 있음.
- 국내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체류 중인 시리아 난민들의 가족들은 대체로 터키나 인접 국가의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1) 시리아에서 육로(陸路)를 통해 급히 피신하면서 여권이 없는 경우가 많고, 2) 여권이 설령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현재 원칙적으로 시리아 국적자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어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가족들이 떨어져 있게 되는 상황이며, 어떻게든 인천공항까지 도착을 해야 가족이 입국 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한국정부는 가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막고 있는 상황임.

[표4] 가족결합원칙의 실질적 보장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한 난민 인정자와 시리아 인도적 체류자의 비교

	난민 인정자의 경우	시리아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A. 본인에 대한 여행 증명서 발급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 : 대한민국 출국하여 타국의 가족을 만날 수 있음	없음 : 시리아 여권기간 만료 시 시리아 외 타국으로 갈 수 없음
B. 가족에 대한 비자 부여	가족관계만 확인되면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법무부 당국의 협조로 비자발급에 일정한 편의가 제공	가족관계를 불문하고 비자발급을 하지 않음
C. 가족에 대한 여행 증명서 발급	없음 :본국 여권이 없는 경우, 위조여권 등을 이용하지 않는 한 출국하여 한국으로 올 수 없음	없음 :좌동
D. 한국에서 가족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	난민(F-2) :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신속한 심사 후 당연지위부여	인도적 체류(G-1-6) : 시리아 국적자라는 사실에 따 라인도적 체류허가

- 현행 법제에서 난민 인정자에 대해 한국은 비록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가족에 대한 비자부여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보호 필요성이 동일한 준(準)난민인 인도적 체류자에게는 비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제한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와 가족에게 만이라도 비자를 부여하는 것을 인도적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시급함.
- 한편,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를 불문하고,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어차피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하여 차후에 여행증명서도 발급해줄 것이 명백할 경우, 브로커를 통해 위조여권을 만들어 한국으로 오게끔 방치하지 말고, 재외 공관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본국의 난민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제한적인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제3국을 출국하여 한국으로 오게끔 도울 수 있는바, 이는 인도적 체류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정책임.
-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여권이 없는 가족을 위해 심사를 거쳐 해외공관에서 단회용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있고, 영국 Home Office의 경우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에 대해 일정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제3국에서 가족결합비자(Family Reunion)를 신청할 수 있고, 여권을 도무지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사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결합비자가 부착된 Uniform Format Form도 발급할 수 있고, 스웨덴 Migration Agency의 경우도 시리아 난민에게 가족결합으로 체류(Swedish Residence Permit)를 신청 시 가족관계가 입증되어 체류허가를 받은 이후 자국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면 스웨덴 여권을 발급하고 있음.
- 이에, 난민 및 망명자를 위한 유럽이사회(ECRE; European Council on Refugees on Exiles)는 EU 국가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마저 제출키 어려운 시리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족결합의 기준을 완화할 것과, 시리아 난민들의 가족에 대한 가족결합비자, 비자가 부착

된 특정한 증명서 등으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Information Note on Syrian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n Europe(2013)].

- 한편, 한국정부도 재정착희망난민의 경우 유엔난민기구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 외교부와 협의, 여행증명서를 현지 교부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검토하였는바(법무부 난민과 보도자료 2014. 10. 29.자), 이처럼 시리아 난민의 가족에 대한 가족결합비자의 부여 및 출국을 보장할 단회의 여행증명서 발급 정책은 정책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시행에 대한 비교법적, 인도적 근거도 충분함.

5. 사회권, 교육권 미보장의 문제

-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난민의 경우 난민 인정자들과 달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격근거(난민법 제32조), 국민과 동일한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필요한 교육의 지원 가능 근거(난민법 제33조), 본국에서의 학력 및 자격 인정의 근거(난민법 제35조 제36조)등이 없어서, 사회보장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의 기초인 교육을 아동과 성인 불문하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한국에서 장기적인 삶을 전혀 설계할 수 없는 상황임.
- 현재, 위 쟁점에 관한 법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익표의원이 대표로 10인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안(2015년 5월 22일, 의안번호 15234)이 난민인정자의 권리 중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에 관한 조항을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서 통과가 긴요함.

[대책3]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통한 시리아 난민의 재정착 수용

- 국내에 이미 체류하고 있거나, 향후 자발적으로 도착할 난민들에 대한 보호대책 외에, ‘난민들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데려와서 보호하는 재정착제도(Resettlement)에 역시 적극 이를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자국민도 돕지 않는 판에 왜 난민인가’와 같은 주장으로 분출 될 수 있는 일부 국민적 정서가 있을 수 있으나, 시리아 난민보호 필요의 시급성과, 국가가 인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행위에 대한 지원은 결국 장기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 상향의 형태로 함께 돌아올 것임을 적극 설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때 1) 기존의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받은 시리아 난민들과 재정착 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2) 재정착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비판 뿐 아니라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국내의 파일럿 형태의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비판에서 읽을 수 있는 미완결된 현행 제도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문제 제기는, 공평한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착난민제도를 통해 보호할 시리아 난민들의 대상 선정은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적극 반영하여 시급한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삼되, 차제에 앞에서 논한 바대로 그와 유사한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기존의 국내 인도적 체류 지위 부여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재심사를 통해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까지 함께 고려하면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 시행중인 30명의 미얀마 난민 재정착과 더불어 현재의 제도 준비 수준을 고려하여 다수(多收)를 대상으로 하는 시행은 어렵더라도 30명 동수(同數) 또는 현행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의 추가적인 수용은 얼마든지 이행할 수 있음.
- 만약 이처럼 당국이 시범단계에서부터 규모와 무관하게 시리아 난민들 재정착계획을 발표, 이행할 경우 실질적인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힌 나라가 없는 아시아권에서 난민 수용 국가들을 향해 시리아 난민 보호에 관한 새로운 동력까지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Reference

- 국가인권위원회(2013) “인도적 체류자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제한 정책개선”
- 법무부(2010)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 법무부(2015) “외국인을 위한 매뉴얼(체류), 외국인을 위한 매뉴얼(사증)”
- 법무부 보도자료(2015.4.23.), “외국인정책, 경제활성화 지원과 저출산.고령화에 집중 대응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2015년 상반기까지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심의 확정 - ”
- 난민 및 망명자를 위한 유럽이사회(2013), “Information Note on Syrian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n Europe”
- 유엔난민기구(2013.10.22.) “International Protection Considerations with regard to people fleeing the Syrian Arab Republic, Update II”
- 난민인권센터, “국내난민현황(2015. 5. 31)” (<http://www.nancen.org/1402>, 2015. 9. 13. 최종 접속)
- 유엔난민기구, “Syria Regional Refugee Response - Inter-agency Information Sharing Portal” (<http://data.unhcr.org/syrianrefugees/regional.php>, 2015. 9. 13. 최종접속)
- 유엔난민기구, “RESETTLEMENT FACT SHEET 2014” (<http://www.unhcr.org/524c31a09.pdf>)
- NPR뉴스(2014.8.29.) “U.N.: Syrian Refugee Crisis Is 'Biggest Humanitarian Emergency Of Our Era'”
- 영국정부, “Settlement: refugee or humanitarian protection”, (<http://www.gov.uk/settlement-refugee-or-humanitarian-protection/family-reunion> 2015. 9. 13. 최종접속)
- 스웨덴,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garding family reunification” (<http://www.migrationsverket.se/English/Private-individuals/Moving-to-someone-in-Sweden/Syria/Information-for-Syrians/Frequently-asked-questions-regarding-family-reunification.html> 2015. 9. 13. 최종접속)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2015-07

한국내 시리아 난민 수용의 제문제 - 현황, 심사, 처우에 관하여

발행일 2015. 10. 22

발행처 (재)더미래연구소(이사장: 최병모)

Copyright ©더미래연구소, 2015 ※본 자료는 더미래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더미래연구소는 대한민국의 '더 좋은 미래' 를 만들어 가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 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 성장은 '후원회원' 의 힘과 꿈으로 가능합니다.

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902호(여의도동, 정원빌딩)

T: 02-785-2030, F: 02-786-2017, E: themirae2030@gmail.com

웹사이트: themirae.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mirae

블로그: blog.daum.net/themirae2030
